



엠파이어 스테이트 자녀 세액공제(Empire State Child Credit)에 누가 해당 자격이 있습니까?

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뉴욕주에 1년 내내 거주했거나 1년 내내 거주한 사람의 배우자
- 자격 요건이 되는 부양자녀*가 있고, 동시에
-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:
 - 연방세공용지 1040 또는 1040A에 연방 자녀세액공제(federal child tax credit)나 연방 추가자녀세액공제(federal additional child tax credit)를 청구한 경우 또는
 - 연방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았고 연방 조정 총소득액(AGI)이 다음과 같은 경우:

세금보고 형태	연방 조정 총소득액(AGI)
부부 공동세금보고	\$110,000 이하
독신자 또는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유자격 미망인(또는 홀아비)	\$75,000 이하
부부 별도보고자	\$55,000 이하

*자격 요건이 되는 부양자녀는 세금보고연도 12월 31일에 적어도 4살이 되어야 하며 연방 자녀세액공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.

세액공제는 얼마입니까?

연방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한 경우 엠파이어 스테이트 자녀 세액공제는 다음 중 더 큰 액수가 됩니다.

- 부양자녀에게 부여되는 연방 자녀세액공제의 33%
- 자격 요건이 되는 부양자녀 수에 곱하기 \$100

연방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위에 나열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엠파이어 스테이트 자녀세액공제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자격 요건이 되는 부양자녀 수 곱하기 \$100

본 세액공제의 신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, 세무양식 IT-213, *Claim for Empire State Child Credit*(엠파이어 스테이트 자녀세액공제 신청) 및 관련 지침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(영어버전만 사용가능).

참고:이 공제액이 내야할 세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환급처리됩니다. 단 1년 내내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